



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수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32호, 2014.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강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6. 7., 2014. 1.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특별수강생”이라 함은 본교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① 학사과정 특별수강생은 국내·외의 정규대학 정규과정을 1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
 ② 석사 및 박사과정의 특별수강생은 당해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입학) 특별수강생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학과(부)의 서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수강허가) 입학을 허가받은 자의 수강은 소속대학(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하되, 학위과정별로 2개 학기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만 수강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정원) 특별수강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위탁이 있을 경우와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강증명) 특별수강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등) ① 수강이 허가된 자는 당해학기 또는 계절수업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당해학기 재학생의 납입금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09. 8. 7., 2014. 1. 3.]
 1. $\text{수강료} = \text{수업료} \times \text{수강학점수} \div \text{수강신청기준학점수}$ (학사과정 : 18학점, 대학원과정 : 12학점)
 2. [삭제 2014. 1. 3.]
 ③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계절수업만을 위한 수강료는 따로 정한다.
 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학기당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2학점, 대학원과정에서는 6학점 이내로 한다.

제10조(수강허가취소) 특별수강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특별수강생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932호,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